

규 칙

2007년 1월 29일 제정 2007년 10월 30일 개정 2008년 11월 21일 개정 2009년 1월 20일 개정
 2009년 8월 21일 개정 2009년 12월 24일 개정 2010년 10월 29일 개정 2010년 12월 15일 개정
 2011년 12월 23일 개정 2012년 12월 14일 개정 2013년 12월 19일 개정 2014년 12월 17일 개정
 2015년 5월 7일 개정 2016년 1월 29일 개정 2017년 1월 18일 개정 2017년 6월 15일 개정
 2018년 1월 9일 개정 2019년 3월 20일 개정 2020년 3월 25일 개정

현행안	개정안
전 문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현대위이지회는 자주적 단결체로서 조합원들의 경제적 생활권을 옹호하고 정치, 사회, 문화적 지위를 확립하여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평등 사회를 건설하고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규약 제4장 2절에 의거하여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50조(지회의 운영)와 지부규정 부칙 4조(경과조치) 3항에 의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현대위이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 지회의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53 현대위아(주)내에 두고, 평택, 울산2공장에 별도의 사무소를 둔다. 제4조(활동)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지부 의결기관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현행안	개정안
제5조(운영) 1. 지회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 규정, 지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지회 규칙, 세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2. 지회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 규정, 지부의 규정, 규칙 및 지회의 규칙, 세칙에 의하여 운영한다. 3. 지회는 필요시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공장 단위에 분회를 설치 할 수 있다. 단, 경남지역은 분회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분회의 운영은 지회 규칙 및 세칙, 분회에서 정한 분회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 2 장 조직 제6조(범위 및 구성) 1. 본 지회는 현대위아(주)에 고용된 노동자로 구성한다. 2. 지회는 필요할때 대의원 회의의 의결에 따라 공장 단위로 분회를 둘 수 있다. 3. 지회가 속한 지부의 관할지역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별도의 분회로 구성되지 않은 범위의 조합원은 지회 소속으로 한다. 제7조(가입·탈퇴 절차) 조합 규약 및 지부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자격 상실) 조합원이 사망하였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하고,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 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9조(권리) 지회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 11조(조합원의 권리)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 규정, 지회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다.	

현행안	개정안
제10조(의무) 지회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지부, 지회규칙을 준수할 의무 2. 지회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3. 조합과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11조(기구) 지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회의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감사위원회 6. 고충처리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기타 규약, 규정 및 지회규칙에 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절 총회	
제12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지부 대의원대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2. 총회소집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회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현행안	개정안
제13조(소집공고) 지회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 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1-7항을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회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3. 지회 의견접근안 가·부에 관한사항 4. 대의원 선출 5. 지회의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단,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2조 (구성 및 소집)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8. 지회 감사 선출 및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 유고 시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9. 지회의 사업보고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지회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11. 지회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2.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 안건 심의 및 교섭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3. 지회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14. 노사협의회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5. 지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6. 지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7. 지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18. 지회 운영위원 선출 19. 지회 선거관리위원 선출 및 선거관리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0. 지회 신분보장 관리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현행안	개정안
21. 지회 불참자 처리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22. 지회 무급전임자 임금지급 세칙 제정 및 개정 에 관한 사항 23.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24. 분회 설치에 관한 사항 2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의 제15조(구성 및 소집) 지회 대의원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는 지회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의는 지부의 대의원대회 후 15일 이내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2. 대의원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회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 받았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16조(소집공고) 지회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다.	

현행안	개정안
제17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대의원 선출 및 불신임) 지회 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대의원 선출은 부서(공장)별로 하며, 창원, 울산, 광주, 평택으로 지역 구분한다. 단, 지회임원과 집행위원은 제외한다. 2. 지부대의원은 지회 대의원이 된다. 단, 지회장은 당연직 지부 대의원이 된다. 3. 지회대의원 선출은 조합, 지부 대의원 선거와 같이 한다 4. 대의원 임기 중 사임, 불신임, 사망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단,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는 해당기간동안 공석을 두고 재적성원에서 제외한다. 5. 사고 선거구인 경우 해당 선거구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요구 할시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6. 기타 지회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 대의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 세칙에 따른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19조(구성 및 임기) 지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 임원과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차기 운영위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0조(소집)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과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현행안	개정안
제21조(기능) 지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회 총회(대의원회의)의 수입 사항 2. 지회 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선거관리 세칙, 불참자처리세칙, 신분보장관리세칙, 무급전임자 임금지급세칙 제외) 3. 지회 규칙 및 각종 세칙의 해석에 관한 사항 4. 지회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 및 안건에 관한 사항 5. 지회 조합원 징계 및 <u>표창</u> 건의에 관한 사항 6. 지회 예산 목간 전용 승인에 관한 사항 7. 조합기금운영 규정에 따른 지회 조합원 신분보장 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지회장 유고 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9. 지회 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0.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22조(구성 및 소집) 집행위원회는 지회 임원 (감사 제외), 지회장이 임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단, 필요시 차장을 둘 수 있다.)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기능) 지회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총회, 대의원회의와 운영위원회 수입사항 집행 2. 지회의 각종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 조합 및 지부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제반 지부 및 지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조합원 <u>표창</u> 및 징계에 관한 상정 안 수립 6. 규칙 및 각종 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상정 안 수립 7. 지부 운영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5. 지회 조합원 징계 및 <u>포상</u> 건의에 관한 사항 5. 조합원 <u>포상</u> 및 징계에 관한 상정 안 수립

현행안	개정안
제5절 각종 위원회 제24조(고충처리 위원회) 지회 조합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세부사항은 고충처리 위원회세칙에 의한다. 제25조(선거관리 위원회)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담당하고 모든 선거를 관리한다.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세칙에 의한다. 제6절 회의 제26조(회의 성립과 결의) 지회 각종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7조(회의진행) 지회의 각종회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 할 수 있다. 제 5 장 임원 및 부서 제28조(임원) 지회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장 1명 2. 수석 부지회장 1명 3. 부지회장 약간 명 4. 분회장 2명 5. 사무장 1명 6. 감사 약간 명 제29조(임무) 지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1) 지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지회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지회의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지회 각부·차장의 임면제청권을 갖는다. 6)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현행안	개정안
2. 수석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 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 유고 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분회장 1) 분회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분회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분회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4) 지회 임원이 된다. 5. 사무장 1)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감사에 응한다. 6. 감사 1) 지회의 재산과 조합비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는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감사 요청이 있을 시는 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제30조(임원선출) 1. 지회 임원 중 지회장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2. 수석 부지회장과 사무장은 지회장 입후보자의 추천에 의하여 동반출마(러닝메이트)하며, 지회장 당선시 함께 선출된다. 3. 분회장 (평택, 울산)은 자체 선출한다. 4. 부지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 회의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5.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세칙에 따른다	

현행안	개정안
제31조(임원의 보궐선거) 1. 지회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포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유고 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선은 1회 이내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 지회장의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회장, 수석 부지회장, 사무장의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2.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이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어 선출한다. 제33조(임원의 탄핵) 1.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칙, 지회의 운영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과반수 참석과 참석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34조(부서) 지회는 업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2. 조직쟁의부 3. 정책기획부 4. 교육선전부 5. 문화체육부 6. 조사통계부 7. 복지부 8. 고용대책부 9. 노동안전보건부 10. 법규부	

현행안	개정안
제35조(업무) 본 지회의 각부서의 업무는 처무세칙에 의한다. 제 6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6조(단체교섭) 1.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2. 지회의 단체교섭위원은 지회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7조(단체협약의 체결)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단, 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섭위원 연명으로 서명하여 체결한다. 제38조(쟁의) 지회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 규약에 따르되, 지회단위의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회 대의원회의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7 장 노사협의회 제39조(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관련 제반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지회 규칙으로 정하며,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은 조합 및 지부에 7일 이내로 보고한다. 제40조(노사협의회위원 구성) 노사협의회 위원은 지회장이 위촉한 5명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두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행안	개정안
제 8 장 재정 및 기타 제41조(재정) 지회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회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조합비는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대로 납부하고, 상회하는 금액은 조합 의결기구의 별도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징수한다. 단, 상회 분은 지회 자체 재정으로 한다.(기존의 각종 기금도 동일하게 징수하고 운용한다) 제42조(회계 구분) 지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세부사항은 회계세칙에 의한다. 제43조(회계 연도) 지회의 회계 연도는 조합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44조(조합비)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통상임금(개별기본금 제외)의 1.71%로 한다. (0.71%는 조합비2로 관리한다.) 제45조(예산 미성립 시 회계) 제44조(조합비)에도 불구하고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세입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46조(예산 향간 및 목간전용) 예산은 정기대의원 회의에서 심의, 확정하되, 예산의 목간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1/4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예산액의 20%이상 전용과 예산향간 전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7조(감사) 회계 및 업무상의 적정여부는 감사위원이 분기마다 감사하고,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지부장에게 통보하며 대의원 회의에 결산을 보고한다. 필요시 대의원회의의 의결로 조합 또는 지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단, 분기종료 후 30일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안	개정안
제 9 장 포상·징계 및 신분보장 제48조(포상) 조합원이 조합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집행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지회장이 포상할 수 있고, 지회장은 조합 및 지부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49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 운영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제청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50조(신분보장) 1.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시에는 그 신분 및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고,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기금운영 규정에 따르되 조합원에게 기존 운용방식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2. 무급전임자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 무급전임자 임금지급 세칙에 따른다.	
제 10 장 분회구성 및 운영세칙 제51조 (분회의 설립과 운영) 분회는 본 규칙 제6조(범위 및 구성)와 제14조(의결사항)에 따라 설립하여 그 운영에 관하여는 분회 대의원회의에서 정하는 분회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52조 (분회의 의무) 지회의 결의된 사항과 위임이나 요청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분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활동사항 및 수지결산 보고(1분기에 1회) 2. 조직보고(매월) 3. 노사교섭사항 및 사업 결과보고(매월) 4. 분회는 교부금 총액의 15%를 의무금으로 지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행안	개정안
제53조 (분회의 통제 및 지원) 지회장은 분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통제한다. 1. 분회기관이 지회의 결의사항과 요청, 위임사항에 반하는 결의를 하였을 시 이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2. 분회의 재정 집행상태 및 조직관리 상태가 부실하다고 판단 될 때는 재정적 지원 및 특별감사를 명할 수 있다.	
제54조 (분회 운영세칙) 분회 운영세칙은 규약 및 지회규칙 범위 내에서 분회의 합리적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운영세칙을 제정 운영한다. 1. 분회 운영세칙은 분회대의원회의 결의로 제정 및 개정한다. 단, 재 세칙은 지회의 세칙에 따른다. 2. 분회운영 세칙 중 조합 규약 및 지회 규칙에 위배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 11 장 해산	
제55조(해산) 지회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56조(청산) 지회는 제55조(해산)에 의해 해산할 때에는 해산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회장은 총회 (대의원 회의)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의 청산위원을 임명하고, 청산위원은 지회자산 청산 안을 작성하여 총회 (대의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	

현행안	개정안
제 12 장 부 칙 제57조(통상관례) 본 규칙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 지부규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58조(시행) 본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9조(겸직금지) 지회 임원이 조합, 지부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지회 집행부는 현 임기에 한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제60조(개정)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지회규칙(모범)이 개정 또는 폐지되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회는 지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지회규칙을 자동 개정한다. <u>제61조(경과조치) 조합10기 (제20대) 임원의 임기는 2017년 10월부터 3개월 연장한 2019년 12월말까지로 한다.</u>	<u>제61조 삭제</u>